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감사담당관)

의안번호	제166호
제 출 자	정운주의원 외 10명(2023. 8. 21.)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사회적 영향 및 사후적 평가 등에 관한 조치를 마련하고,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와 이익의 비교형량 등을 규정(안 제3조 ~ 제4조)
-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갈등영향분석을 규정(안 제5조 ~ 제6조)
- 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능, 제척,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동 등을 규정(안 제7조 ~ 제11조)
- 마. 비밀유지,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평가 등을 규정(안 제12조 ~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3. 8. 21. ~ 2023. 8. 26.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성북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성북구가 공공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등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갈등영향 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공공갈등이란 정부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 개정, 각종 사업 계획의 수립 추진을 포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행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함.

○ 과거에는 공공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님비(NIMBY)¹⁾ 현상이 주로 있었으나 최근에는 님비와 펌피(PIMPY)²⁾ 현상이 혼재하여 발생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음.

○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

1) 님비(NIMBY) :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자신이 사는 곳에 설치하는 것만은 기피하는 현상

2) 펌피(PIMPY) : 주민 거주 지역에 선호 시설이 들어오도록 경쟁적으로 노력하는 집단 이기주의

출되고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현재도 입법예고 중에 있음.

- 공공갈등관리가 중요하나 해당 근거 법률은 없으며, 현재는 국무총리실 소관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정·시행 : 2007. 12. 2)에 근거하여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공공갈등 예방 관련 조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75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며, 그중 서울은 강동구 등 14개 구에서 제정됨.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이익의 비교형량,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함.
 -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제척 등, 심의결과의 반영,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비밀유지,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갈등관리실태의 평가, 수당지급 등에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 본 조례제정안은 성북구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이라 사료됨.